

주말수업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7조에 따른 주말수업 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말수업의 실시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한 사정으로 주중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학점 취득기여 부여
2. 직장인과 만학도, 원거리 학생 등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
3. 평생교육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학습권 제공
4. 교양 및 전공과목 습득 기회 제공으로 인한 자기발전을 도모
5. 변화된 시대에 대비한 유연한 학사 운영

제2조(개설과목) 졸업학점에 필요한 전공과목 및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과목을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개설시기 및 시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의 총 강의 시간은 학기 매주 정규강의 시수에 15주를 곱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강사선정) 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강의료) 강의료 산정은 본교예산의 지침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은 초과강의료를, 외래강사는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6조(수강신청) 통상 학기 수강신청 규정에 준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험) 시험은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과목별로 실시하되 지필고사, 실기시험, 구두시험, 과제물 제출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시험지 등은 해당 교과목 교수의 재량으로 보관한다.)

제8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45분을 1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

제9조(집중수업) 총장의 승인하에 필요에 따라 원거리 수강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전체 신청학점의 1/3은 интен시브 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사항) 그 외 사항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르며 기타 미비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